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2012년 9월 pp.113~140

한국세무학회

합병시 이월결손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승계에 관한 조세전략 사례 연구

이호용* · 최원석**

— <요 약> —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로 인하여 신용카드회사는 거액의 손실발생과 유동성위기에 직면하여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으며, 2004년초 우리신용카드는 우리은행으로, 외환신용카드는 외환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다. 두 은행 모두 합병 검토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절세를 위해 우리신용카드는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방안(1안)을, 외환신용카드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발생시켜 이를 승계하는 방안(2안)을 선택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유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절세방법을 선택한 두 회사의 사례를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우리신용카드 사례의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신용카드와 우리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계약적 관점’ 및 ‘모든 세금’의 암묵세 관점에서 1안 선택으로 합병비율이 변경되어도 합병비율 변경이 없는 2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명목세 측면에서는 1안이 2안보다 3,610억원 유리하였다. ‘모든 비용’의 관점에서는 1안이 유상증자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점에서 불리하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신용카드는 보다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선택한 것이다.

외환신용카드 사례의 경우 외환은행이 외환신용카드의 지분을 68.6%만 보유하여 ‘계약적 관점’과 ‘모든 세금’의 암묵세 관점에서 합병비율이 변경되는 1안이 2안보다 불리하고, 명목세 관점에서는 1안이 2안보다 274억원 유리하였다. ‘모든 비용’의 관점에서 1안은 유상증자 자금의 기회비용이 명목세액 절감액을 초과하며, 추가적인 합병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환신용카드도 더욱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본 사례는 계약적 관점에서 과세당국도 거래당사자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두 사례에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충족하지 못한 지분을 10% 기준은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나, 본 사례의 합병은 지분을 10%에 미달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였으므로, 세법 개정을 통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였다면 두 법인 모두 보다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이 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효과적인 세무계획, 합병, 이월결손금, 대손충당금, 계약적 관점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why250@kbstar.co.kr, 주저자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부교수, wschoi@uos.ac.kr, 02-6490-6796,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2년 7월

1차수정일 2012년 7월

게재확정일 2012년 7월

I. 서 론

2008년 2월 27일자 머니투데이 보도 『시중은행들, 정부와 ‘세금전쟁’』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국세청의 과세적정성에 대해 다투고 있는 세액이 1조원대에 이르며, 이중 합병과 관련된 세액이 약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약 2,000억원은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역 합병과 관련된 과세액이며, 나머지 6,000억원은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로 인해 은행과 신용카드사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와 관련된 세액이다.

2003년에는 신용카드 부실사태로 국내에 금융위기가 일어나 신용카드사들은 대규모 적자 및 유동성위기가 발생되어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용카드사들은 모회사 인 은행에 합병되거나, 유상증자 등의 지원에 힘입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당시 은행과 카드사의 합병은 2003년 9월말 국민은행과 국민신용카드 합병, 2004년 3월말 우리은행과 우리신용카드 합병, 2004년 2월말 외환은행과 외환신용카드의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신용카드사의 막대한 이월결손금을 승계받기 위해 각각의 조세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우리신용카드 합병 시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후 합병을 하였으며, 외환신용카드 및 국민신용카드 합병시에는 이월결손금 승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대손충당금을 활용하는 조세전략을 실행한 것이다.

이후 세무조사시 우리신용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우리은행에 부과한 세액은 없으나, 외환신용카드 합병 및 국민신용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2007년 세무조사시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각 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외환은행은 2009년 9월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으로 부과된 세액을 환급받았으나,¹⁾ 국민은행은 2010년 3월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으로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²⁾

본 논문은 이월결손금 승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외환신용카드 및 국민신용카드의 합병사례 중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국민신용카드 합병관련 건은 제외하고,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한 우리신용카드 합병사례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Scholes et al.(2008)에 따르면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① 모든 거래당사자들을(all parties) 감안하는 계약적 관점(contractual perspective)에서 수립되고, ② 암묵적 조세(implicit taxes)까지 포함하는 모든 세금(all taxes)을 고려하며, ③ 세금비용 뿐만 아니라 세금 이외의 모든 비용(all costs)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한 연구로 정운오와 김갑순(2007), 정운오와 고종권(2007), 정운오 등(2008), 정운오와 전규안(2009) 및 김갑순 등(2010)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이 기업이 실제 선택한 한 가지 방안에 대해서만 효과적인 세무계획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유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대안을 선택한 사례들을 비

1) 2009.9.29 외환은행 자율공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2012.3.30 국민은행 사업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교 분석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선택한 세무계획이 다른 대안에 비해 더욱 효과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에 비해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신용카드사가 은행과 합병하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된 요인을 비교하고, 이를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두 가지 대안 중 보다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선택한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은 본 사례에 활용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조건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정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에 대해 개괄하고, 제Ⅲ장에서는 합병의 배경이 된 신용카드 부실사태와 우리신용카드의 합병 및 외환신용카드의 합병거리를 상세히 소개한다. 이어서 제Ⅳ장은 회사가 선택한 조세전략과 다른 회사의 조세전략을 선택한 경우를 가정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측면에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본 사례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Ⅱ. 조세전략에 활용된 법인세법상 규정

1.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

가. 현행 규정

현행의 법인세법은 2009.12.31 개정으로 아래 <표 1>에 정리된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에 한하여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

<표 1>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요건(현재)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사업목적 합병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지분의 연속성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사업의 계속성
4. 합병법인이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경리할 것.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제1호)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2010.7.1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나. 사례당시 규정

본 연구대상 사례의 경우 2004년에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의 이월결손금 승계와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은 아래 <표 2>에 정리된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에 한하여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할 수 있었다.⁴⁾

<표 2>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요건(사례당시)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사업목적 합병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지분의 연속성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3호)－사업의 계속성
4.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조세회피목적 방지
5. 합병법인이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경리할 것.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구분경리
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장부가액 승계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합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이어야 하는 요건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부실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⁵⁾ 금융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 10%이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1999년 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2항을 신설하였다. 동 조항의 신설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화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합병의 경우 자본금 차이가 많은 법인간의 합병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4)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5) 대한민국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1999.7.5 정부안), 1999.8

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및 합병시 승계 규정

가. 현행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회사에 적용되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과 관련된 한도액은 아래 <표 3>과 같이 현재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2% 또는 대손실적률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표준비율’)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3>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현행)

‘가. 와 나.’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해야 함 가. MAX [채권잔액의 2%,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나. 표준비율
--

한편, <표 1>의 적격합병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로 인해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⁶⁾

나. 사례당시 규정

본 연구대상 사례는 2004년도 중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회사에 적용되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과 관련된 한도액은 아래 <표 4>와 같이 현재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2% 또는 대손실적률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과 표준비율 중 한도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표 4>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사례당시)

‘가. 와 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가. MAX [채권잔액의 2%,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나. 표준비율

한편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대손충당금 금액은 별도의 조건 없이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⁷⁾

6)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7) 당시 법인세법 제49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 85조

Ⅲ. 결손기업과의 합병사례

1. 합병의 배경

가. 신용카드 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몰락⁸⁾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신용카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것은 1969년 7월이다. 당시 신세계백화점에서 발행한 신세계카드(일종의 백화점 카드)가 등장한 이후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998년말 63조 5,567억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443조 3,674억원에 이르렀으며, 2002년말에는 678조원으로 불과 4년만에 10배 가량 늘어났다. 또한 카드 발급수는 1998년말 4,200만장에서 2001년에는 8,933만장, 2002년에는 1억 480만장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가맹점수는 1998년말 460만 업소에서 2001년에는 1,262만 업소로, 2002년에는 1,561만 업소로 3배나 증가하였다. 신용카드 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신용카드사들의 순이익도 급증하여 카드전업사를 기준으로 1998년 361억원에 불과하던 당기순이익은 2001년말 2조 6천억원에 달해 무려 72배의 순이익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002년 상반기에도 1조 1천억원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업의 급속한 성장배경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축진이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내수증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상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보 등을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있었으며, 주요 추진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정부의 신용카드 관련 주요정책

구 분	주 요 내 용
1997년 8월	신용카드사에 대한 일반대출 허용, 총차입한도(자기자본의 20배) 및 카드발급기준(소득 700만원이상, 종소세 30만원 이상) 폐지
1999년 2월	신용판매 취급비중(총 여신액의 40%이상) 폐지
19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70만원) 폐지
1999년 8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신설
2000년 1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2001년 8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

출처 : 이계경 국회의원실, 200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신용카드 사태에 대한 원인분석

8) 김문환, 2004, 신용카드의 부실과 금융불안, 고우경제 신년호 : 37-48 참조

그러나 2001년말 2.5%에 불과하였던 신용카드채권의 연체율은 2003년 2월말 10.4%로 4배 이상 치솟았으며, 연체자산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대손비용도 2001년말 2조 3천억원에서 2002년말 7조 3천억원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으며, 2002년 하반기에 7,973억원의 적자를, 2003년 상반기에는 3조 211억원이라는 최악의 적자를 내면서 부실산업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나. 신용카드 부실사태의 주요 원인

감사원은 신용카드회사의 부실원인을 규명하여 위기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3년말과 2004년에 걸쳐 금융기관 감독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2004년 7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신용카드관련 부실의 발생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⁹⁾

(1) 신용카드 이용자의 결제능력을 초과한 카드사용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전략과 맞물려 상환능력도 없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자가 늘어나 신용불량자수가 1999년 59만명에서 2003년 240만명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신용불량자 지원방안, 채무탕감 등 개인신용회복 지원방안 등으로 채무상환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 행태를 보인 점이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2)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자금차입에 의한 현금대출 위주의 외형확대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시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를 최고한도, 신용카드 발급기준(근로소득 700만원 이상 등),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월 70만원) 등을 폐지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자 수익성이 높은 현금대출 위주의 외형확대 경영을 추구하며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을 자초하였다.

(3) 신용카드사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미흡

신용카드 이용자의 결제능력을 초과한 무분별한 카드이용과 신용카드사의 무리한 외형위주의 영업은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완화 및 이용활성화 조치에서 비롯되었으나, 기획재정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이러한 신용카드 규제완화 및 이용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적기에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사에 대한 감독기준 미비 또는 감독 미흡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사 부실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신용카드사의 부실이 확대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9) 감사원, 200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금융기관 감독실태 : 28-36 참조

2. 우리신용카드와 우리은행의 합병사례

가. 합병조건

2004년 2월 5일에 우리신용카드는 이사회에서 우리신용카드 재무구조개선 및 영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우리은행에 피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합병조건은 아래 <표 6>과 같았다.

<표 6> 우리은행과 우리신용카드의 합병결의 내용

구 분	우리은행	우리신용카드
합병방법	우리은행이 우리신용카드 흡수합병	
합병이유	우리신용카드 재무구조개선 및 영업경쟁력 강화	
합병기일	2004년 3월 31일	
자본금	3,179,782,900,000원	113,000,000,000원
발행주식수	635,956,580주/주당 5,000원	22,600,000주/주당 5,000원
합병비율	0.3581	1
합병비율산출	주당 자산가치 비율을 근거로 산출	
교부주식수	보통주 65,389,060주	
기 타	합병비율 및 합병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우리신용카드의 증자 예정액(8,000억원)의 증자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출처 : 우리은행 및 우리신용카드의 합병결의 공시자료, 200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신용카드가 우리은행과의 합병시 우리은행의 자본적정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26일에 우리신용카드에 8,000억원(160백만주)을 유상증자 하였으며, 그 후 우리신용카드는 2004년 3월 31일에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다.¹⁰⁾

우리은행은 우리신용카드의 합병과 관련하여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4장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따라 합병기준일 현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과 우리신용카드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¹¹⁾

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

우리신용카드는 우리은행과의 합병을 결정하면서 8,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전제로 합병비율을 결정하였으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검토결과는 <표 7>과 같다.

10) 우리금융지주 2004년 1분기 검토보고서 주석

11) 우리은행 2004년 1분기 검토보고서 주석

<표 7> 우리신용카드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승계요건	충족 가능여부
1. 사업목적 합병	요건충족 가능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사업 영위하던 법인임)
2. 지분의 연속성	요건충족 가능 (합병대가의 100%를 우리은행 주식으로 받음)
3. 사업의 계속성	요건충족 가능 (합병 이후 현재까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음)
4. 조세회피목적 방지	요건충족 가능 (발행주식 총수의 10.28% 상당 주식을 교부받음)
5. 구분경리	요건충족 가능(실제 구분경리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았음)
6. 장부가액 승계	요건충족 가능 (실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음)

다만, 합병 직전 유상증자 8,000억원을 하지 않았다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합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회사가 선택한 조세전략

우리신용카드사는 합병직전 8,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전제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고, 합병법인의 주식 65,389,060주를 교부하였다. 이로 인해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이 합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28%가 되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본금의 증자를 유도하고 있었으나 은행으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가 불필요하였고, 은행과 합병하는 경우 은행의 수신자금을 카드사업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증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자본금을 증자한 것은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외환신용카드와 외환은행의 합병사례

가. 합병조건

2003년 11월 28일에 외환은행과 외환신용카드 이사회는 경영자원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으로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합병조건은 아래 <표 8>과 같았다.

〈표 8〉 외환은행과 외환신용카드의 합병결의 내용

구 분	외환은행	외환신용카드
합병방법	외환은행이 외환신용카드 흡수합병	
합병이유	경영자원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으로 수익성 향상	
합병기일	2004년 2월 28일	
자본금	3,248,156,495,000원	319,500,000,000원
발행주식수	649,631,299주/주당 5,000원	63,900,000주 ¹⁾ /주당 5,000원
합병비율	0.533689	1
합병비율산출	합병신고서 제출일(2003.11.28) 전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1주일간·최근일의 평균 증가의 평균액과 최근일 증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²⁾	
교부주식수	보통주 10,706,372주	
기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은행의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음	

출처 : 외환은행 및 외환신용카드의 합병결의 공시자료, 200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1) 합병전 주식수량에서 외환은행이 보유한 외환신용카드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그 외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가정한 자료이며, 실제로는 외환신용카드 주주들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외환신용카드가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 8,852,485주에 대해서도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 합병 후 총 주식수는 644,906,826주(자본금 3,224,534,130,000원)임

주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의함

외환은행은 2004년 2월 28일 현재 외환신용카드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¹²⁾들 중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신용카드 주식 및 외환신용카드가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제외한 외부주주들에 대하여만 외환신용카드 1주당 은행의 보통주 0.533689주의 비율로 5,981,895주를 교부하였으며, 동 교부주식은 2004년 3월 31일 현재 은행의 총 발행보통주식의 0.93%에 해당되어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한편, 외환은행 보유분과 외환신용카드 보유분 주식에 대해서도 외환은행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총 교부주식수가 34,102,727주로 총 발행주식수의 5.13%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합병대가로 발행하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때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합병후 외환은행의 주가하락을 예상하여 많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합병비용이 증가하고, 합병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¹³⁾

12) 2003년말 현재 외환신용카드의 주주는 외환은행(68.6%), 기타주주(31.4%)로 구성되어 있었다.

13)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 실무적으로는 상장법인이 합병신고서 제출시 증권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협의 불성립시의 매수가격 결정기준(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산정된 최근 2개월, 1개월, 1주간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증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제시하고

외환은행과 외환신용카드 모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상장법인이었으며, 외환은행은 상기의 합병이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해당되므로, 합병기준일인 2004년 2월 28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였다.

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

외환은행이 외환신용카드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외환신용카드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승계요건	충족 가능여부
1. 사업목적 합병	요건충족 가능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사업 영위하던 법인임)
2. 지분의 연속성	요건충족 가능 (합병대가의 100%를 외환은행 주식으로 받음)
3. 사업의 계속성	요건충족 가능 (합병 이후 현재까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음)
4. 조세회피목적 방지	요건충족 불가능(외환은행은 실제 합병대가로 5,981,895주를 교부하였으며, 이는 은행의 총 발행보통주식의 0.93%에 불과하였음 ¹⁾)
5. 구분경리	요건충족 가능(우리은행 사례와 같이 구분경리 가능함)
6. 장부가액 승계	요건충족 가능 (실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음)

주1) 외환은행 보유지분과 외환신용카드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총 신주 발행주식수는 34,102,727주로, 합병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664,614,208주의 10%에 여전히 미달함

외환은행이 10%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가정을 해 본다면 유상증자를 결정함으로 인해 합병비율이 변동되는 상황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환신용카드와 외환은행의 합병비율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사회의 합병결의일 기준 2개월 평균, 1개월 평균, 1주 평균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실상 추정이 불가능하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합병비율이 1 : 0.533689 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약3,370억원(액면가액 5,000원 기준, 67,400,000주)을 증자한 후 합병을 하였다면 추가로 35,970,640주가 발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외환은행이 보유한 외환신용카드 지분 및 외환신용카드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가정한 총 발행주식수 700,584,847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합병대가로 발행된 주식수가 70,073,366주가 되어 10%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외환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방안과 같이 대주주에 대한 완전감자, 소액주주에 대한 20 : 1의 감자가 실행되었다고 가정한다면, 10%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환신용카드 주식 1,313만주가 새로 발행되어야 하므로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6,565억원의 유상증자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주주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회사가 선택한 조세전략

외환은행은 외환신용카드를 흡수합병 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게 되자 외환신용카드의 2004년 의제사업년도 세무조정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작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발생시켰으며, 동 한도초과액으로 인한 세무조정사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14)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하였고, 합병후 외환은행의 2004 사업년도 세무조정시 손금에 산입하는 조세전략을 선택하였다.

즉, 외환신용카드의 합병전 2004년 의제사업년도의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이 약 830억원이며 표준비율에 의한 금액 7,010억원이었으며, 일반적인 경우 손금산입 금액이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한도액이 큰 금액을 선택하지만 외환신용카드사는 손금산입액이 커지면 이월결손금액이 커지지만 합병법인으로 승계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도액이 작은 금액을 선택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발생시켰고, 동 금액은 합병법인인 외환은행에게 승계되어 전액 손금산입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회사의 세무처리에 대해 과세관청은 2006년 세무조사시¹⁵⁾ 외환신용카드가 1998~200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채권잔액의 2%, 대손실적을, 표준비율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하여 왔으나, 합병으로 인한 의제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합병후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부당하게 증가시키기 위하여 한도액이 큰 표준비율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일관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세무조정을 하였더라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감소로 피합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증가하였을 것이고, 이는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감소시키지는 못하였을 것이므로,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적게 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따른 손금산입액 6,180억원을 손금불산입 처분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외환은행은 이러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년 9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즉,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가장 큰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각 사업연도별로 대손충당금의 한도액 산정기준 채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선택이 가능했던 점,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선택이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합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은 피합법인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14) 2008.2.29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전임

15) 2006년 3분기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으로 2007년 중순경 부과고지 되었다(외환은행의 2006년 3분기 및 2007년 2분기 검토보고서 참조).

IV. 경제적 효과 비교분석 및 효과적인 세무계획 측면의 해석

1. 회사가 선택한 조세전략의 절세효과

가. 우리신용카드 사례

우리은행과 합병전 우리신용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070,531백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우리신용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내역

(단위 : 백만원)

발생년도	금 액	발생년도	금 액
2000년	299,926	2003년	1,279,731
2001년	—	2004년	374,049
2002년	116,825	합 계	2,070,531

출처 : 우리은행 각 연도 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우리은행은 우리신용카드와의 합병으로 이월결손금 2,070,531백만원을 승계하여 508,085백만원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5년을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총 1,562,446백만원을 공제함으로써 436,271백만원의 법인세 및 주민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절감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우리은행의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절세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손금사용	세 율	절감세액
2004년	299,926	29.7%	89,078
2005년	325,600	27.5%	89,540
2006년	339,069	27.5%	93,244
2007년	315,093	27.5%	86,651
2008년	282,758	27.5%	77,758
합계액	1,562,446		436,271

출처 : 우리은행 각 연도 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외환신용카드 사례

합병법인인 외환은행이 승계한 외환신용카드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1,396십 억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외환신용카드의 합병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단위 : 십억원)

1. 회사계상액			1,479
2. 세무상한도 [가, 나 중 선택]	가. Max[①, ②]	83	83
	① 2%	83	
	② 실적률	0	
	나. 표준비율	701	
3. 한도초과액	2-1		1,396

출처 : 외환은행 2006년 3분기 실적 공개 첨부자료 참조

외환은행은 외환신용카드가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시 표준비율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1,396,362백만원을 승계하여 손금산입하였고, 이로 인해 2004년에는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되어 부담세액이 없었고, 이후 합병전 발생한 은행의 결손금을 포함한 누적 결손금 1,925,109백만원이 2005년 및 2006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되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은 2006년에 발생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외환은행이 실제 승계한 한도초과액 기준의 부담세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소득금액	(1,137,522)	1,461,584	697,446	1,021,508
이월결손금		(1,461,584)	(463,525)	(1,925,109)
과세표준	0	0	233,921	233,921
세율	29.7%	27.5%	27.5%	
부담세액	0	0	64,328	64,328

출처 : 외환은행 각 연도 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국세청의 부과처분 내용과 같이 외환신용카드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보다 큰 금액이 되는 표준비율을 선택하였더라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778,268백만원이 되었을 것이며, 외환은행이 동 금액을 승계하여 손금산입 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법인세 부담내역은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외환은행이 표준비율 적용 한도초과액 승계시 부담세액 예상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소득금액	(519,428)	1,461,584	697,446	1,639,602
이월결손금	0	(1,307,015)	0	(1,307,015)
과세표준	0	154,569	697,446	852,015
세 율	29.7%	27.5%	27.5%	
부담세액	0	42,506	191,798	234,30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환은행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환신용카드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반적인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액이 더 큰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조세절감을 목적으로 대손충당금 한도액이 더 작게 계산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618,094백만원을 추가로 승계하여 손금산입 함으로써 약 169,976백만원의 조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다. 조세절감액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승계관련 외환은행의 절감세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회사선택	과세표준	0	0	233,921	233,921
	부담세액	0	0	64,328	64,328
표준비율 적용시	과세표준	0	154,569	697,446	852,015
	부담세액	0	42,506	191,798	234,304
차액	과세표준	0	154,569	463,525	618,094
	부담세액	0	42,506	127,469	169,976

2. 조세전략 대안 선택시 절세효과

가. 우리신용카드 사례

우리은행이 우리신용카드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더라면 외환은행과 외환신용카드의 합병시 조세전략과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이 커지도

록 조절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가정하여 절세액을 추정하였으며, 우리신용카드의 2004년 3월말 기준 재무제표 등은 공시된 자료가 없어 일정한 가정을 하여 금액을 산출하였다.

(1)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우리신용카드의 합병전인 2004년 3월말 기준의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대출채권 순액은 약 941,379백만원¹⁶⁾이고, 우리신용카드는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금융감독원 최소적립액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설정대상 채권액 대비 약 21%로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발생되지 않았다.¹⁷⁾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 회계처리기준보다 은행법상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보다 엄격하다. 예컨대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고객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경우 카드사는 ‘요주의’로 분류하고 12%의 충당금을 적립하지만, 은행 회계기준으로는 ‘고정’ 내지는 ‘회수의문’ 등급으로 분류돼 20%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합병전 우리신용카드는 추가로 약 111,593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고, 동 금액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⁸⁾

따라서 우리신용카드사가 설정대상채권액의 약 21%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액 이외에 추가로 111,593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의 순액이 약 941,379백만원인 경우 설정대상 채권액은 약 1,332,876백만원,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391,497백만원으로 추정된다.

(2)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004년 3월말 합병 당시 우리신용카드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채권잔액 대비 2%와 대손실적률을 반영한 금액 중 큰 금액과 표준비율 적용시 적립금액 중 유리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2004년 2월말 합병한 외환신용카드사의 경우 대손실적률이 2%보다 낮았으므로 이를 준용¹⁹⁾하면, 우리신용카드사의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2% 기준의 약 26,658백만원과 표준비율 기준의 약 279,904백만원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

16) 우리은행 2004년 1분기 검토보고서의 합병전 우리신용카드 요약대차대조표 참조

17) 우리신용카드 2003년 감사보고서 주석 참조

18) 파이낸셜뉴스, 2004.3.2 ‘우리·외환銀 대손충당금 비상’ 제목의 기사 및 우리은행의 2004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참조

19) 3개월간의 실제 대손상각 실적률이 2%를 초과하였을 수도 있으나, 세무상 대손금 처리는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결산상 대손상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2%보다 낮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절세액

우리신용카드가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고 외환신용카드가 선택한 방안과 같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이 작아지는 방법을 선택하여 한도초과액을 승계하였다면, 약 253,246백만원을 추가로 승계하여 2004년 세율 29.7%를 적용한 75,214백만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외환신용카드 사례

외환신용카드의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이용하는 방안대신 우리신용카드와 같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선택한 경우 절세할 수 있었던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외환신용카드사의 합병전 과세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외환신용카드사의 합병전 과세소득 발생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²⁰⁾	합 계
과세소득	(73,360)	(683,915)	657,370	(99,905)
조정금액			(618,094)	(618,094)
조정후 과세소득	(73,360)	(683,915)	39,276	(717,999)

출처 : 외환신용카드 각 연도 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04 사업년도의 경우 외환신용카드의 이월결손금을 외환은행이 합병시 승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한도액이 큰 표준비율을 선택하여 한도초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이 감소되어 과세소득을 감소시켰을 것이므로 이를 가정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하였다.

외환은행이 외환신용카드를 합병하면서 외환신용카드의 이월결손금 717,999백만원을 승계하였다면, 2004년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 은행분 결손금 누적액 1,307,015백만원과의 합계액 2,025,014백만원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게 되어 합병후 외환은행의 부담세액은 36,854백만원이 되었을 것이다. 세부 계산내역은 <표 22>와 같다.

20) 2004년도의 과세소득은 공시된 자료가 없어 2003년 대비 신용카드업의 손실이 일부 회복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2003년 결손금의 90%를 기준으로 월할계산한 (102,587)백만원에 2003년말 대비 2004년 세무조정시 급증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759,957백만원을 가산하여 추정한 자료이다.

〈표 22〉 외환은행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정시의 부담세액 예상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소득금액 ¹⁾	(519,428)	1,461,584	697,446	2,159,030
이월결손금	0	(1,461,584)	(563,430)	(2,025,014)
과세표준	0	0	134,016	134,016
세율	29.7%	27.5%	27.5%	
부담세액	0	0	36,854	36,854

주1) 2004년 결손금은 2005년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어 있어 합계액에서 제외하여 표시

위와 같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의 부담세액과 위 <표 20>과 같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 커지도록 조절하지 않았을 경우의 부담세액의 차액으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로 인한 절감세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절감세액은 약 197,450백만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절감세액의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외환은행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정시의 추가 절감세액 예상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표준비율 적용시	과세표준	0	154,569	697,446	852,015
	부담세액	0	42,506	191,798	234,304
결손금 승계시	과세표준	0	0	134,016	134,016
	부담세액	0	0	36,854	36,854
차액	과세표준	0	154,569	563,430	717,999
	부담세액	0	42,506	42,506	197,450

3. 효과적인 세무계획 측면의 해석

가. 우리신용카드 합병사례

(1) 계약적 관점

합병의 직접적인 당사법인은 우리신용카드와 우리은행이었으나, 각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모두 우리금융지주였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결정이 한쪽 회사의 주주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두 우리금융지주에게 귀속되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

게 된다. 만일 우리신용카드사의 주주 중 우리금융지주 이외의 주주가 있고, 유상증자시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금융지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그 만큼 추가로 증자에 참여해야 하고 이월결손금 승계로 인한 절세효과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에게도 귀속하게 된다.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해 추가로 유상증자를 하는 방안은 합병법인인 은행의 장래 세금을 줄이게 되나, 피합병법인인 신용카드사의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주주인 금융지주사는 증자금액과 관련하여 세무상 영향이 없거나, 추가 차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추가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계약적 관점’으로 볼 때, 이월결손금을 승계받기 위해 우리금융지주가 8,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행한 것은 합병거래 당사자들간의 이러한 지분구조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활용한 세무계획은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주주들의 추가 부담이 발생되지 않으며 합병법인인 은행의 장래 세금을 줄이게 되나, 피합병법인인 신용카드사의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²¹⁾ 주주인 금융지주사에는 세무상 영향이 발생되지 않는 방안이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합병거래 당사자들의 세금 측면에서 금액적으로 다르더라도 계약적 관점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방안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모든 세금(암묵세 고려)

명시적인 세금의 절세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활용하는 방안에 비해 361,057백만원 유리하였다. 그렇다면 암묵세 관점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까?

우리신용카드와 우리은행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결정하였다. 유상증자를 하여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와 합병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쳐 우리은행이 합병대가로 교부해야 하는 주식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만큼의 암묵세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활용하는 방안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암묵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 유상증자를 하는 방안에 암묵세가 발생되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이용하는 방안은 암묵세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본 사례의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이용하는 방안이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합병법인 입장에서 발생된 암묵세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 모두 우리금융지주 단일주주이므로 실질적으로 암묵세가 없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21) 손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결손이 누적된 상태이므로 납부세액이 없다.

(3) 모든 비용 고려

고려해야 하는 모든 비용 중 실제 거래를 통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수수료 등의 비용은 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대외이미지 등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고객들이 맡긴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업은 그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존립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성 등 대외이미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은행은 탈세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병전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²²⁾을 받아 세무계획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였다. 그러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활용하는 방안은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기는 하였으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로 볼 가능성이 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와 세액추정으로 대외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면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방안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은 약 8,000억원의 유상증자 자금이 필요하므로 자금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우리금융지주가 2003.12.16 만기 5년의 무보증사채 3,000억원 발행시 이자율이 5.92%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474억원의 비용이 발생되게 되어 자금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활용하는 방안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통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방안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계약적 관점에서 동일한 거래당사자들이 고려대상 이었고, 실질적인 암묵세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유상증자 자금의 기회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명목세 361,057백만원의 감소나 세무조사와 세액추정으로 인한 대외이미지 악영향 등의 측면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방안이 보다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할 것은 과세당국이 모든 거래에서 초대받지 않은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이다. 즉 일반적인 거래당사자와 달리 과세당국은 각 거래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약조건을 협의하지 않고 납세자가 수용해야 하는 표준적인 계약조건의 집합체로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거래당사자인 과세당국의 거래조건 변경, 즉 세법의 개정도 중요한 세무계획의 하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병의 계기가 된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22) 서면2팀-364, 2004.3.4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걸림돌이었던 합병교부주식이 합병법인의 지분 10%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이지만 동 사례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동 10% 제한 조건은 IMF 경제위기시 은행들간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31일에 조세특례제한법²³⁾을 신설하여 1999년말까지의 합병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외하였던 점, 현재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에는 조세회피 방지목적으로 합병 교부주식이 합병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삭제²⁴⁾된 점을 근거로 보았을 때 충분히 세법개정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요컨대, 세법 개정의 모색을 통해 10%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었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외환신용카드 합병사례

(1) 계약적 관점

외환은행이 외환신용카드 합병 직전 보유하고 있던 외환신용카드의 지분율은 68.5%이고,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31.5%였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와 은행 모두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이었기 때문에 합병비율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1주일간·최근일의 평균 증가의 평균액과 최근일 증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활용한 세무계획은 유상증자와 같이 주주들의 추가 자금부담이 발생되지 않으며 합병법인인 은행의 세금을 줄이게 되나, 누적 결손상태의 피합병법인인 신용카드사의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두 법인의 주주에게는 세무상 영향이 발생되지 않는 방안이다.

한편, 이월결손금을 승계받기 위해 외환신용카드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기타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외환은행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을 위해 그만큼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 충족에 따른 절세효과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도 귀속되게 되며, 유상증자시 외환신용카드의 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합병비율이 변동되고 외환은행의 합병교부 주식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계약적 관점’에서 외환은행은 이러한 부담이 없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더 유리한 방안이었다.

23)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2항

24) 동 요건은 2009.12.28 세법개정시 반영되어 동 사례당시에 사전적으로 알 수 없었을 것이지만, 조세회피 방지목적으로 10%기준이 적용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10% 기준과 관계없이 신용카드사와 은행의 합병사례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같다고 본다.

(2) 모든 세금(암묵세 고려)

외환은행 사례에서도 명시적인 세금의 절세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활용하는 경우의 169,976백만원보다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197,450백만원이 27,474백만원 만큼 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암묵세의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활용하는 방안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외환은행의 합병의제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내부적인 세무조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서 합병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암묵세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은행이 유상증자의 방안을 선택하였다면 외환신용카드의 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합병비율이 변동되고 외환은행의 합병교부 주식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외환은행 입장에서는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합병대가 만큼의 암묵세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암묵세 부담이 없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3) 모든 비용 고려

우리은행의 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유상증자 방안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사전에 받아두었고, 세법에서 의도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세’방법에 가까우나,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을 활용하는 방안은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어 ‘조세회피’로 볼 가능성이 보다 많았으므로, 세무조사와 세액추징으로 인해 대외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측면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방안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병비율의 변경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약 3,370억원의 유상증자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자금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외환은행이 2003.5.28 만기 30년의 채권형 신종 자본증권 2,500억원 발행시 이자율이 8.5%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286억원의 비용이 발생되게 되며, 이는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경우 추가로 절감하게 되는 세액 274억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한 방법이 된다. 그리고 당시 합병을 검토하였던 외환은행의 이사회는 합병 발표시 카드사의 주가는 상승하고 은행의 주가는 하락할 것으로 보았고, 합병으로 발행하는 주식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이 아닌 일반합병이므로 은행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갖게 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²⁵⁾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10%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환은행이 보유한 외환신용카드의 주식에 대해서도 신주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었으며,²⁶⁾ 이는 은행주주의 주식매수 청구로 인한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방

25) 보도자료로 배포된 외환은행 제23차 이사회 의사록(2003.11.20) 참조

26) 최근 유권해석(법인세과-3606, 2008.11.25)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의 합병시 완전모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모회사 보유지분에 대해 신주발행을 하지 않아도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나, 2004년 당시에는

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측의 주도로 외환신용카드의 주가하락을 통해 합병비율이나 외환신용카드의 주식매수청구가격 등 합병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여, 외환신용카드의 감자후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외환신용카드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감자의 실익이 크지 않고 합병추진 발표 후에도 외환신용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회복되지 않자 감자 없이 합병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외환신용카드의 주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 합병을 결의하고자 하였다. 2003년 11월 27일에 감자 없는 합병방침이 외부로 알려져 외환신용카드의 주가가 전일대비 14.9% 상승한 2,930원이 되자, 론스타측은 2003년 11월 28일에 합병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자 없는 합병을 결의하였고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4,004원으로 확정하였다.²⁷⁾ 이러한 진행상황을 보았을 때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를 진행하였다면, 그동안 외환신용카드의 주가상승으로 인해 합병비용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외환은행과 외환신용카드의 합병사례를 유상증자를 통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방안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명시적 세금 측면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이 27,474백만원 유리하지만, 그 외의 계약적 관점에서는 외환신용카드의 소액주주로 인해 외환은행에 좀 더 불리하였으며, 합병비율의 증가로 인해 합병대가로 교부해야 하는 주식수를 증가시켜 암묵세를 발생시키며, 모든 비용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유상증자 자금의 기회비용, 은행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합병비용 증가, 외환신용카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증가로 인한 합병비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동 금액이 명목세액 절감액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은행의 합병사례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과세당국을 거래당사자의 하나로 인식하고 세법 개정을 모색하는 방안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방안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신주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27) 2006년 9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펀드와 외환은행 이사진을 허위감자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하였다.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008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관련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V. 결 론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로 인해 신용카드회사는 거액의 손실발생과 유동성위기에 직면하여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신용카드는 2004년 3월말 세무상 누적결손금 2조705억원이 발생된 상태에서 우리은행에 흡수합병 되었고, 외환신용카드는 2004년 2월말 세무상 누적결손금 7,180억원이 발생된 상태에서 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합병검토 시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의 요건 중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이 합병법인 주식총액의 10%를 초과해야 하는 요건(조세회피목적 방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신용카드는 8,000억원의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약 4,363억원의 세액을 절감하였으며, 외환신용카드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세무조정시 한도초과액이 더 많이 발생되도록 한도액으로 선택함으로써 6,180억원의 한도초과액을 추가로 발생시켜, 실질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중 6,180억원을 승계한 것과 같아 1,974억원의 세액을 절감하였다.

한편 우리은행이 선택한 조세전략은 사전에 유권해석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두어 세무조사시 과세되지 않았으나, 외환은행이 선택한 조세전략은 정기세무조사시 과세된 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과세가 취소되었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신용카드와 외환신용카드가 세액을 절감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을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우리신용카드와 외환신용카드가 은행과 합병시 조세전략을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방안(1안)과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발생시키는 방안(2안)으로 나누어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비교한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우리신용카드 사례의 경우 ‘계약적 관점’에서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신용카드와 우리은행의 지분을 100%를 보유하고 있어 1안 선택시 합병비율이 변경되어도 합병비율 변동이 없는 2안과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세금’의 관점에서는 1안이 합병비율 증가로 인해 암묵세가 발생될 수 있으나, 우리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인해 2안과 같이 실질적인 암묵세 부담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1안이 2안보다 명목세를 361,057백만원이나 더 많이 감소시키는 방법이 된다. 또한 ‘모든 비용’의 관점에서는 1안이 유상증자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점에서 다소 불리하나 명목세액 절감액에 비해 중요하지 않으며, 2안은 세무조사시 추정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추정세액 발생시 은행의 평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 요컨대 우리신용카드가 실제 선택한 방법인 1안은 2안에

비해 ‘계약적 관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모든 비용’의 관점에서는 자금의 기회비용으로 불리한 면이 있지만, ‘모든 세금’의 관점에서 명목세의 절감액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더욱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신용카드 사례의 경우 ‘계약적 관점’에서는 외환은행이 외환신용카드의 68.6%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 1안 선택시 소수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추가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없는 2안보다 불리하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 관점에서 1안은 2안보다 명목세를 더 많이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그 금액은 27,474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합병대가 추가지급이라는 암묵세가 발생된다. 또한 ‘모든 비용’의 관점에서도 1안은 유상증자 자금의 기회비용이 명목세액 절감액을 초과하며, 외환은행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능성 및 외환신용카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상승 등의 추가 합병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2안은 이러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는다. 요컨대 외환신용카드의 입장에서는 명목세를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는 1안보다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암묵세 및 비조세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선택한 2안이 더욱 효과적인 세무계획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사례는 계약적 관점에서 과세당국도 거래당사자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두 사례에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충족하지 못한 지분율 10% 기준은 조세회피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나, 본 사례의 합병은 지분율 10%에 미달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였고, 1999년 8월 31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2항의 신설로 은행들간의 합병시 한시적으로 10%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세법 개정의 모색을 통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였다면 두 법인 모두 보다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감사원, 200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금융기관 감독실태
- 국민은행 사업보고서, 2012.3.3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김갑순·정운오·전병욱. 2010.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공격적 세무계획과 세금외비용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례.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 187-214
- 김문환, 2004, 신용카드의 부실과 금융불안, 고우경제 신년호
- 대한민국국회, 199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1999.7.5 정부안)
- 머니투데이, 2008.2.27, 시중은행들, 정부와 '세금전쟁'
- 외환은행 2006년 3분기 실적 공개 첨부자료
- 외환은행, 2003.11.20, 제23차 이사회 의사록
- 외환은행 및 외환신용카드 각 연도 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외환은행 자율공시자료, 2009.9.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외환은행 및 외환신용카드의 합병결의 공시자료, 200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우리금융지주, 2004, 2004년 1분기 검토보고서
- 우리은행 및 우리신용카드 각 연도 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우리은행, 2004, 2004년 1분기 검토보고서
- 우리은행 및 우리신용카드의 합병결의 공시자료, 200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이계경 국회의원실, 200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신용카드사태에 대한 원인분석
- 정운오·고종권. 2007. D회사의 국제조세리스 : 세금재정거래 사례. 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 79-104
- 정운오·김갑순. 2007. A회사의 Corporate Trade 사례 : 세무계획의 계약적 측면. 세무학연구 제24권 제3호 : 205-227
- 정운오·김갑순·전병욱. 2008. 세무상 이월결손기업과의 합병 : 하나은행 사례.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 163-195
- 정운오·전규안. 2009.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이용한 글로벌 세무전략 사례. 회계저널 제18권 제4호 : 241-263
- 파이낸셜뉴스, 2004.3.2 '우리·외환銀 대손충당금 비상'
- Scholes, M.S., Wolfson, M. Erickson, E.L. Maydew, and T. Shevlin. 2008.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Prentice Hall

A Case Study on Tax Planning Using Net Operating Loss and Non-Deducted Bad Debt Reserve on Merger

Lee, Ho-Yong* · Choi, Won-Seok**

〈Abstract〉

Many of Korean credit card companies were threatened with collapse due to their huge debts and deteriorating asset quality in 2003 when a credit bubble burst in Korea. In response to liquidity problems of a credit card company, some of Korean banks were required to merge troubled credit card companies. As a result of it, Woori Banks merged Woori Credit Card and Korea Exchange Bank merged Korea Exchange Credit Card.

In both cases, at the initial phase of merger, two banks were not supposed to enjoy tax benefits stemming from a transfer of net operating losses incurred by two credit card companies because both cases did not meet the conditions stat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for net operating loss transfer to a merging entity. In order to maximize tax benefit from the merger, Woori Bank and Woori Credit Card chose to increase capital of Woori Credit Card before the merger with a view to meeting a key condition for net operating loss transfer (Option1) and Korea Exchange Bank and Korea Exchange Credit Card selected to transfer of non-deducted bad debt reserve of Korea Exchange Credit Card (Option2).

This study presents an analysis on two cases which two banks chose a different tax saving strategy in a similar situation and adopted a tax planning approach.

In case of Woori Credit Card, Woori Financial Holding Company owned 100% share of Woori Bank and Woori Credit Card so that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from a contractual perspective as well as an implicit tax perspective of all taxes, between Option 1 entailed a change in the merger ratio and Option 2 brought no change in the merger ratio. From an explicit tax perspective, Option 1 is more favorable by 360 billion Korean Won, whereas Option 1 is slightly less favorable owing to an opportunity cost arising from the increase of capital from an all cost perspective. Consequently, this study concludes that Woori Credit Card was successful in choosing a more favorable tax planning strategy associated with the merger.

* M.A.,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why250@kbstar.co.k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wschoi@uos.ac.kr

In case of Korea Exchange Credit Card, Korea Exchange Bank owned 68.6% share of Korea Exchange Credit Card so that Option 1 subject to a change in merge ratio is less favorable from a contractual perspective and an implicit tax perspective of all taxes. On the other hand, Option 1 is favorable by 27.4 billion Korean Won from a explicit tax perspective. In Option 1, an opportunity cost resulting from an increase of capital exceeded a reduction in explicit tax amount if analyzed from an all cost perspective. Also there would have been an increase of the merge cost if Korea Exchange Bank had chosen Option 1. In this regard, Korea Exchange Credit Card is believed to choose more favorable tax strategy in connection with the merger.

Additionally, this case study suggests that a tax authority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participants in transaction. As a matter of fact, the conditions provid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for a transfer of net operation loss of merged entity were crea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ax evasion using a merger of entity with net operating loss. So, it is likely that tax revision to change its conditions for transfer of net operating loss was acceptable as mergers in both cases was not designed to enjoy tax benefits by a transfer of net operating loss. Their tax planning related to mergers would have been more effective if they had been able to utilize net operating losses from two merged credit card companies.

〈Key words〉 effective tax planning, merger, net operating loss, bad debt reserve, contractual perspective